

감정평가서

건명	이승진 소유물건(2025타경996)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금숙
감정서번호	SIZ25-0516-0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씨브감정평가법인 청주지사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이정진

이정진



(주)써브감정평가법인 청주지사 지사장 이정진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삼억사천일백칠십칠만오천원정 (₩341,775,000.-)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금숙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경매3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승진 (2025타경996)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5.27	2025.05.27	2025.05.29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리)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3.675	토지	3.675	93.000	341,775,000
		이	하	여	백	
합계						₩341,775,000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이강운

이강운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1. 대상물건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소재 "충무공이수일장군묘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2. 대상물건의 기본적 사항 등

가. 대상물건의 기본적 사항

1) 토지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형상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	비고
1	오석리 363-2	3,675	전	전	계획관리, 보전관리	부정형 평지	43,900	-

나. 공법상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사항)

기호(1)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폭발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1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제1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주위 환경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전원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장, 농경지, 야산 등이 혼재하는 남한강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3. 기준시점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05.27.** 일자를 기준시점으로 정함.

4. 실지조사기간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은 **2025.05.27.** 일자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5. 그 밖의 사항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사항 등은 귀 법원 의뢰목록,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근거로 하였음.

나. 본건은 인접지와 의 경계가 불분명한바, 정확한 경계 및 위치확인 은 별도의 측량을 요함.

다. 본건은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토지로서 보전관리지역면적이 미미한 바 본 평가에서는 이에 구애됨 없이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II.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본건의 경우 시장가치, 즉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Ⅲ.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방법

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 등이 있음.

나. 원가방식이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다. 비교방식이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라. 수익방식이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서,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마.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2.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가. 본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거함.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감정평가방식을, 제12조에서는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조정을 규정하고 있음.

다. 본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등을 적용함.

3.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 토지의 평가는 상기 감정평가방식 중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되, 다른 평가방법(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IV. 토지감정평가액의 산출과정

1. 주된 방법(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산출내역

가. 감정평가방식

본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1) 인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2025.01.01)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A	오석리 631	1,593	과수원	전	계획관리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30,900

2) 비교표준지 선정 및 그 사유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인근지역(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 포함)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 하되,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위치하여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기호(A)를 선정·적용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시점수정

1) 시점수정 기준

- ①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서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거시경제지표로서 국지적인 토지의 가치 변동을 반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적용치 아니하였음.
- ②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활용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당해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월의 지가변동률을 추정 적용하였음.

2) 지가변동률

지 역	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 산정
충청북도 충주시 계획관리지역 (2025.01.01 ~ 2025.05.27)	0.594% (1.00594)	2025.01.01 ~ 2025.04.30 : 0.502 2025.04.01 ~ 2025.04.30 : 0.102 $(1 + 0.00502) * (1 + 0.00102 * 27/30)$ ≒ 1.00594

라. 지역요인 비교

비교표준지가 속한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1.00)

마. 개별요인 비교

본건 평가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 간 개별요인 비교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요인 비교치는 각 조건별로 세분하여 비교한 후 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1) 비교항목

조 건	비 교 항 목
접근 조건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및 배수의 양부
획지 조건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 의 정도
기타 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2) 개별요인비교치 산정

기호	비 교 항 목						격차율	개별요인 비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	-	1.05	1.00	1.02	1.00	1.00	1.071	본건은 비교표준지(A) 대비 접근조건(농로의 폭 등) 및 획지조건(경사도 등)에서 우세함.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법원판례 "2003다38207판결(2004.5.14.선고)", "2002두5054(2003.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2) 인근지역 감정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카파 허브 플러스, 단위 : 원/㎡]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	비고
1	오석리 259-4	계획관리	전	2021.02.26	공매	90,000	-
2	오석리 363-2	계획관리, 보전관리	전	2023.04.05	담보	82,000	-
3	오석리 200	계획관리	답	2021.05.25	담보	97,000	-
4	오석리 681-7	생산관리	전	2022.01.03	담보	79,000	-

3)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출처 :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단위 : 원/㎡]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거래금액 (원)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5	오석리 627-1	전	1,276	계획관리	100,000,000	78,370	2021.07.01	토지만 거래
6	오석리 537-1	양어장	1,653	계획관리	271,500,000	164,247	2024.02.01	토지만 거래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4) 인근지역 기간별 낙찰가율

(충북 충주시 용도별 통계, 출처: 인포케어) (2024.05 ~ 2025.04)

구분	낙찰율(기준:낙찰가)			낙찰율(기준:낙찰건)			미진행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낙찰율(%)	총건수	유찰건수	낙찰건수(율)	
주택	8,503,639,210원	4,596,199,520원	54.0%	124건	100건	24건(19.4%)	24건
집합건물	8,145,140,000원	6,604,115,279원	81.1%	229건	170건	59건(25.8%)	38건
상가	18,980,908,280원	10,570,345,805원	55.7%	185건	157건	28건(15.1%)	28건
공장	32,072,246,610원	20,505,999,000원	63.9%	54건	43건	11건(20.4%)	22건
특수부동산	13,992,197,550원	6,078,050,440원	43.4%	75건	62건	13건(17.3%)	15건
토지	35,075,087,885원	17,831,957,529원	50.8%	1,005건	849건	156건(15.5%)	137건
기타토지	430,472,000원	200,219,999원	46.5%	19건	17건	2건(10.5%)	3건
차량의 기타	872,500,000원	642,260,901원	73.6%	67건	45건	22건(32.8%)	2건
합계	118,072,191,535원	67,029,148,473원	56.8%	1,758건	1,443건	315건(17.9%)	269건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① 선례(사례)선정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한 상기 선례(사례) 중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선례 기호(1)을 선정함.

② 산출산식

$$\begin{aligned}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선례(사례) 기준 표준지의 가격}}{\text{기준시점 표준지의 가격}} \\
 &= \frac{\text{선례(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비교} \times \text{개별요인비교}}{\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end{aligned}$$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③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구분	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가격 (원/㎡)	보정치
선례 (기호 1)	90,000	1.09397	1.00	0.882	86,839	2.794
비교표준지 (기호 A)	30,900	1.00594	-	-	31,084	

※ 선례 시점수정 : 2021.02.26. ~ 2025.05.27 충청북도 충주시 계획관리지역 지가변동률

※ 비교표준지가 속한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1.00)

※ 비교표준지(A)/선례(1) 개별요인비교치

기호	비 교 항 목						격차율	개별요인 비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A/(1)	-	0.90	1.00	0.98	1.00	1.00	0.882	비교표준지(A)는 평가선례(1) 대비 접근조건(농로의 상태 등) 및 획지조건(경사도 등)에서 열세함.

④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본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평가선례, 거래사례 및 인근지역 기간별 낙찰가율 통계 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기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2.79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기호	비교 표준지 기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가격 (원/㎡)	결정단가 (원/㎡)
1	A	30,900	1.00594	1.00	1.071	2.79	92,880	93,000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평가개요

토지는 대상토지와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 현재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기타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나. 거래사례의 선정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를 다음과 같이 선정함.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거래금액 (원)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5	오석리 627-1	전	1,276	계획관리	100,000,000	78,370	2021.07.01	토지만 거래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라. 시점수정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1.07.01. ~ 2025.05.27	8.162% (1.08162)	충청북도 충주시 계획관리지역

마. 지역요인 비교

거래사례가 속한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1.00)

바. 개별요인 비교

기호	비 교 항 목						격차율	개별요인 비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	-	1.10	1.00	1.02	1.00	1.00	1.122	본건은 거래사례(5) 대비 접근조건(농로의 상태 등) 및 획지조건(경사도 등)에서 우세함.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78,370	1.000	1.08162	1.000	1.122	95,108	95,000

3.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試算價額)

기호	공시지가기준법 토지단가(원/㎡)	거래사례비교법 토지단가(원/㎡)	비 고
1	93,000	95,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4.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동 규칙에 근거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균형을 이루고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된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결과, 주된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5. 토지가액의 결정

구분	기호	공부면적 (㎡)	사정면적 (㎡)	적용단가 (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1	3,675	3,675	93,000	341,775,000	-
감정평가액(합계)					341,775,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분	기호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1	341,775,000	-
합계		341,775,000	-

2. 종합의견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소재 "충무공이수일장군묘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용도 및 규모, 위치, 주위환경, 인근 평가선례 및 거래가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가격의 적정성이 인정됨.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363-2	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675	3,675	93,000	341,775,000	
합 계								₩341,775,0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소재 "충무공이수일장군묘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전원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장, 농경지 및 야산 등이 혼재하는 남한강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본건에 접하여 시내버스노선이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서측으로 2차선포장도로, 북동측으로 폭 약 3미터 이내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폭발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1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제1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토지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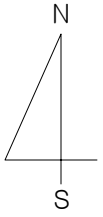
(7)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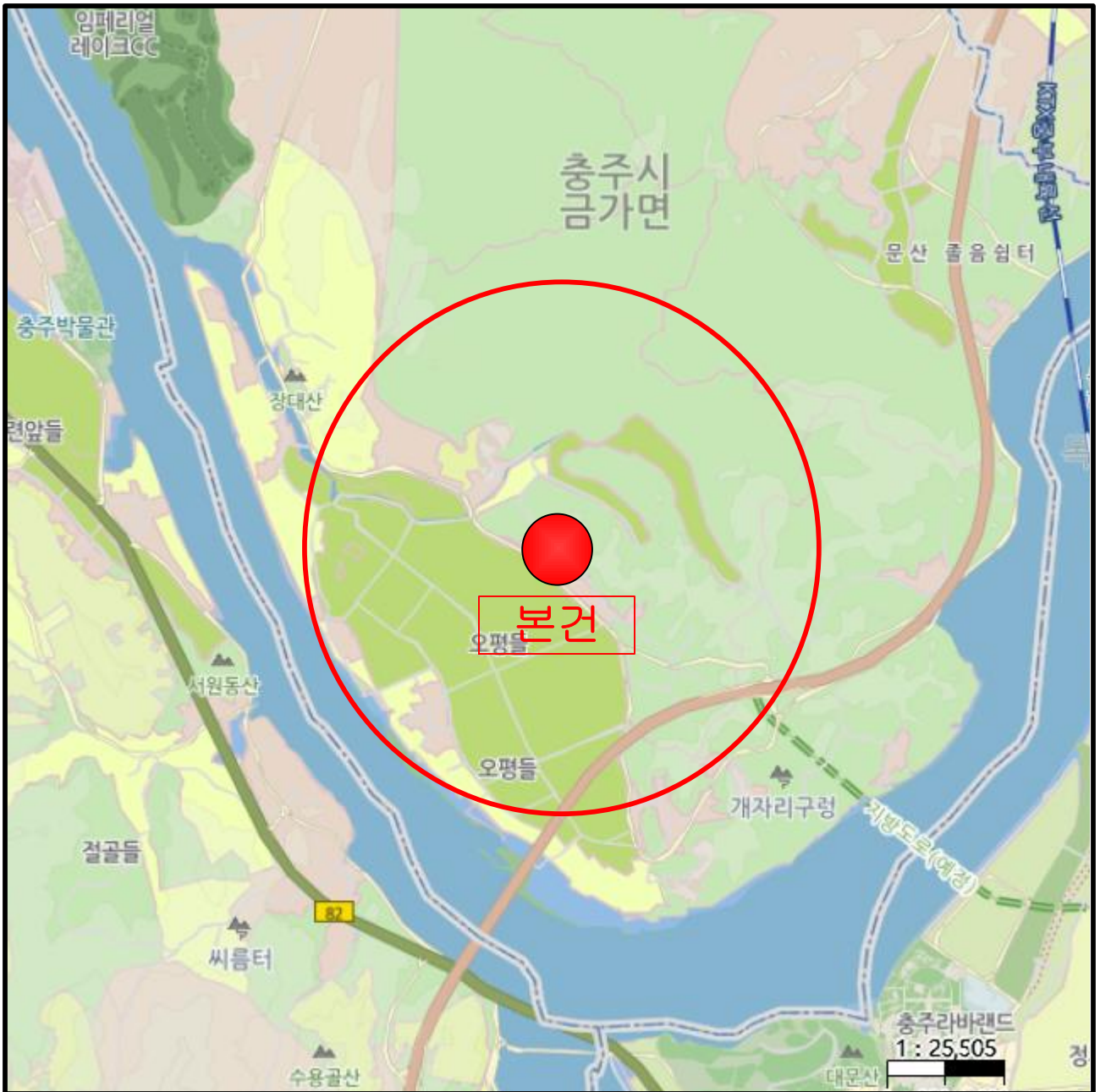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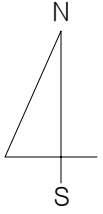
광역위치도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3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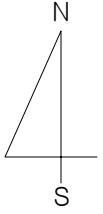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3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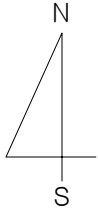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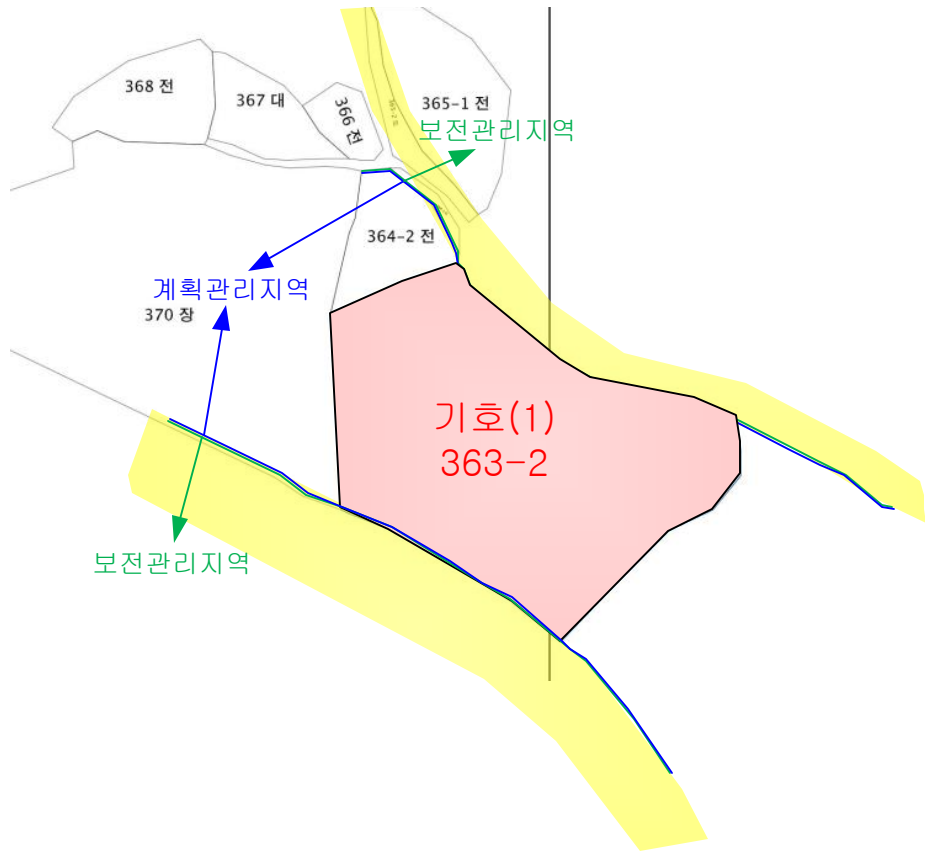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363-2



지 적 개 황 도



NO SCALE



범 례	평가 대상 토지 :		평가 건물 1층 :		지 하 층 :	
	도 로 선 :		평가 건물 2층 :		제시외건물(평가) :	
	도시계획도로선 :		평가 건물 3층이상 :		제시외건물(평가외) :	





